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6 일

여 수 시 장

2024.12.06



여수시 조례 제2154호

붙임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주시 조례 제2154호

여주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주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전통시장상품권”을 “여수사랑상품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p> <p>1.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u>전통시장상품권</u>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 등) -----</p> <p>-----</p> <p>-----</p> <p>-----</p> <p>-----</p> <p>-----</p> <p>-----여수사랑상품권-----</p> <p>-----</p>
2. (생 략)	2. (현행과 같음)